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

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,

그리고 행정자치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서초구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본 조례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공유 재산심의회 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 구체적으로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‘전임강사’라는 명칭이 2011년 7월 21일 개정된 법령에 의해 ‘조교수’로 변경된 지 13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는 아직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이러한 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는 조례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개정이 필요합니다.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「고등교육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,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'전임강사'를 '조교수'로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서울시의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. 그 관리와 처분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. 이 개정안의 통과는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서,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.

본 조례의 개정은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. 조례의 적시 개정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, 공유재산심의회가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.

마지막으로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감안하시어, 본 의원이 제안드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